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 경 실 시 협 약

- 제4차 -

2022년 2월 7일

국토교통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

변경실시협약 (제4차)

국토교통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31일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5월 17일 제1차 변경실시협약, 2013년 3월 29일 제2차 변경실시협약 및 2020년 7월 27일 제3차 변경실시협약을 각 체결하였다(위와 같이 체결 및 변경된 실시협약을 가리켜 이하 "기존 실시협약"이라 한다).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진행 중 출자자 및 금융조건 변경 등에 따른 자금재조달(이하 "본건 자금재조달"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본건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 공유 등을 반영하여 기존 실시협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2022년 2월 7일 다음과 같이 제4차 변경실시협약(이하 "본 변경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정의)

본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본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존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 2 조 (사업수익률에 관한 사항)

기존 실시협약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초	변경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5.03% (세후 4.44%)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세전 실질수익률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4.94% (세후 4.37%)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세전 실질수익률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부록의 변경)

기존 실시협약에 첨부된 부록1, 부록6, 부록7, 부록9 및 부록12는 본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부록1, 부록6, 부록7, 부록9 및 부록12로 대체된다.

제 4 조 (효력발생 및 기존실시협약과의 관계)

① 본 변경실시협약은 본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기존 실시협약의 규정은 본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한하여 본 변경

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본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 다만, 본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협약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서명란은 다음 장에)

본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아래 기재 일자에 본 변경실시협약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2. 7.

대 한 민 국

국토교통부장관 노 형 욱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엄 범 용